

주주님께

**제14기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 여러분의 건승과택내의 평안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정관 제23조에 의거 제14기 임시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5년 4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

2. 장 소 : 서울시 서초구 마방로2길 44(양재동 315-1) 1층 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합병승인 결의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수 있습니다.

5. 주권 교부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13년 4월 16일 통일유가증권을 발행하였고,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주권 교부를 직접 원하시는 주주 분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받으실 수 있으며, 대행예탁을 통해 교부(본인 증권계좌로 입고)를 받고자 하시는 주주 분께서는 필요서류(신분증 사본 및 증권계좌 사본)를 당사(우편 또는 Fax 576-181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IPR팀 070-7308-9240)

6.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 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2015년 04월 06일**

**주식회사 레드비씨 대표이사 최영철 (직인생략)**

## [별첨 1] 제1호 의안 : 합병승인 결의의 건

### 1. 합병의 목적

(주)레드비씨는 국내 전국적 영업망 확대 및 대외 신인도 강화를 통한 영업력 강화, 기술개발 등의 자금 조달을 위해 기업공개를 계획하고 있었으며,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의 이점 및 당사와의 적합성 등을 비교 분석 후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인 키움제2호기업인수목적(주)(이하 "합병회사" 또는 "존속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으로 기업공개를 하기로 판단했습니다. 합병을 통해 당사의 국내 전국적 영업망을 강화할 것이며, 경쟁사 대비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신제품 개발과 함께 이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 2. 합병의 방법

키움제2호기업인수목적(주)가 (주)레드비씨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주)레드비씨는 해산합니다.

### 3. 합병의 요령

#### (1) 피합병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배정에 관한 사항

피합병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보통주주에 대하여 피합병회사의 보통주식(액면금액 500원) 1주당 합병회사의 보통주식(액면금액 100원) 3.0321481주를 교부합니다.

피합병회사가 금번 합병을 진행하면서 주주 중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발생할 경우 해당 주식은 피합병회사의 자기주식이 되며 합병회사와 합병시 합병비율에 따라 신주가 교부될 예정입니다. 합병 신주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2) 교부금의 지급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 주주에게 합병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3) 자기주식 등 소유현황 및 처리방침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일 현재 자기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가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 (4) 합병비율

가. 합병비율 :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합병비율은 1: 3.0321481로 함.

나. 합병비율의 산출근거

합병법인(주권상장법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14년 12월 10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14년 12월 10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14년 12월 9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주권비상장법인) :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본질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평가하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의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협의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3(일반규정 적용 시 비율은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5)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의 종류와 수

합병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11,429,800주

(6) 채권자 보호절차

상법 제527조의 5(채권자보호절차)에 따라 2015년 4월 22일부터 2015년 5월 26일까지 채권자 보호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7) 합병계약서상의 계약 해제조건

제 12 조 계약의 해제

12.1본 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제될 수 있다. 단, 각 해제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회사는 해제할 수 없다.

12.1.1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12.1.2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에 관하여 부도, 해산, 청산,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그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12.1.3 (i) 본건 합병의 승인을 목적으로 하여 소집되는 존속회사와 소멸회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 혹은 주주명부폐쇄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본건 합병에 대한 존속회사와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ii)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가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고 당해 사정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12.1.4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본 계약상의 진술보증 또는 확약, 약정 사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상대방 회사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받고도 5 영업일 내에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위반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정요구가 필요하지 아니함)

12.1.5 본건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매수하여야 하는 각 회사 주식의 총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존속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오십억 원을 초과하거나 소멸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일백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12.1.6 여하한 사유로든 2016년 12월 19일까지 합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12.2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2.2.1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 당사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12.2.2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2.2.3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제12.2조, 제14.1조, 제14.2조 및 제14.8조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8)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사항

- 주식매수예정가격 : 6,225원
- 반대의사통지와 매수청구의 세부 내용은 동봉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주요일정

구분	일정
이사회결의일	2014.12.10
합병계약체결일	2014.12.10
주주명부 폐쇄 및 권리주주확정일 공고일	2015.02.17
합병승인 주주총회를 위한 권리주주확정일	2015.03.06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폐쇄기간	2015.03.09 ~ 2015.03.16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사전반대통지기간	2015.04.06 ~ 2015.04.20
주주총회일	2015.04.2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2015.04.21 ~ 2015.05.11
합병기일	2015.05.27
합병등기일	2015.05.27
합병신주 교부일	2015.06.15
합병신주 상장예정일	2015.06.16

주)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의 개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별첨 2]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안내

1.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우리 회사의 안전(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께서는 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기준일인 2015년 3월 6일 현재 우리 회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로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점까지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다음 행사요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요령

가. 안전(합병)에 대한 반대이사 통지

'이사회결의 반대이사 통지서(붙임 양식)를 작성하여 명부주주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우리 회사에, 실질주주(증권회사에 주식을 예탁한 주주)는 주주총회일 3영업일전 4월 16일까지 거래하는 증권회사에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승인된 경우에는 '이사회결의 반대이사 통지서를 제출한 주주에 한하여' 주식매수청구서(붙임 양식)를 작성하여 명부주주는 소유주권을 첨부하여 매수청구종료일 5월 11일까지 우리 회사에 제출하고, 실질주주는 매수청구종료일 1영업일전 5월 8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주식매수가격과 지급예정일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의거하여 산정된 주식매수가격은 보통주 1주당 6,225원 입니다. 주식매수대금은 2015년 5월 22일에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장소는 명부주주는 우리 회사 경영지원팀, 실질주주는 거래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지급합니다.

4. 기타사항

- 매수청구 취소는 주식매수청구 종료일까지 가능합니다.
- 실질주주의 경우는 거래증권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이사회결의 반대이사 통지서' 및 '주식매수청구서' 제출시한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명부주주의 '이사회결의 반대이사 통지서' 및 '주식매수청구서(주권 포함)' 제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마방로2길 44, 오상빌딩 5층 레드비씨 IR팀		
전화번호	070-7308-9240	팩스번호	02-576-1811

2015년 04월 06일

주식회사 레드비씨 대표이사 최영철 (직인생략)

**[별첨 3]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 . 주식매수 청구서**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

본인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귀사의 이사회 결의사항(합병)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소유주식수	보통주 :
반대의사표시 주식수	보통주 :

2015년 4월 일

주 소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연락전화번호 : )

주식회사 레드비씨 대표이사 귀하

..... 절취선 .....

**주식매수 청구서**

본인은 귀사의 합병에 반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매수를 청구합니다.

소유주식수	보통주 :
반대의사표시 주식수	보통주 :
주식매수청구 주식수	보통주 :

2015년 월 일

주 소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연락전화번호 : )

주식회사 레드비씨 대표이사 귀하